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20

발의연월일: 2020. 8. 18.

발 의 자:김승원·강훈식·김원이

김진표 • 박광온 • 박 정

안민석 · 양정숙 · 이상직

이성만 • 임호선 • 최강욱

한병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13개소에서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시범운영 특화도 서관은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화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특화도서관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.

또, 현행법은 공중의 정보이용·독서활동·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법인 등이 공공도서관을 설립·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그러나 국·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적절한 사전 평가가 필요함에도,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도서관의 난립 및 사후 부실 운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(안 제2조, 제2조의2, 제27조의2, 제27조의3, 제29조 및 제30조).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"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(이하 "공립 공공도서관"이라 한다) 또는 법인(「민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단체 및 개인이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(이하 "사립 공공도서관"이라 한다)을 말한다"를 "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시설은 공공도서관에 포함된다"로 하고,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호 가목 중 "공립"을 "국립·공립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지역별·분야별 콘텐츠를 개발 및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공중의 특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화도서관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공공도서관의 구분)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·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국립 공공도서관: 국가가 설립 · 운영하는 도서관

- 2. 공립 공공도서관: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
- 3. 사립 공공도서관: 「민법」, 「상법」,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

제27조제1항 및 제3항 중 "공립"을 각각 "국립·공립"으로 한다.

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7조의2(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)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7조의3(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) ① 공립 공공도서 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·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(이하 "사전평가"라 한다)를 받아야 한다.
 - ② 사전평가의 절차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"공립"을 각각 "국립·공립"으로 한다. 제30조의 제목·제1항 및 제2항 중 "공립"을 각각 "국립·공립"으로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~ 3의2. (생 략)	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
4. "공공도서관"이라 함은 공중	4
의 정보이용・독서활동・문화	
활동 및 평생교육을 <u>위하여</u>	<u>주된 목</u>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	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,
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	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
률」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	<u>서관에 포함된다</u> . <u><후단 삭</u>
설립・운영하는 도서관(이하	제>
"공립 공공도서관"이라 한다)	
또는 법인(「민법」이나 그	
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	
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단	
체 및 개인이 설립・운영하는	
도서관(이하 "사립 공공도서	
관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u>다</u>	
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	
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.	
가.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	가
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	
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	
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	

조에 따른 <u>공립</u> 공공도서 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 관

나. ~ 바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5. ~ 11. (생 략) <신 설>

 - <u>국립·공립</u>	

나. ~ 바. (현행과 같음)

사. 지역별·분야별 콘텐츠를

개발 및 활용하여 지역사
회와 공중의 특화된 수요
에 대응하는 도서관서비스
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
적으로 하는 특화도서관

5. ~ 11. (현행과 같음)

제2조의2(공공도서관의 구분) 공 공도서관은 그 설립·운영 주 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 다.

- 1. 국립 공공도서관: 국가가 설 립·운영하는 도서관
- 2. 공립 공공도서관: 지방자치

 단체 또는 「지방교육자치에

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

 교육감이 설립・운영하는 도

 서관
- 3. 사립 공공도서관: 「민법」,
 「상법」, 그 밖의 법률에 따
 라 설립된 법인·단체 또는

제27조(설치 등) ①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<u>공립</u> 공공도서관 을 설립·육성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<u>공립</u> 공공도서관은 "도서관"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	개인이 설립·운영하는 도서 관
제:	 27조(설치 등) ①
	<u>국립·공립</u>
	- .
	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국립</u>
-	· 공립
	27조의2(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) ① 중앙 행정기관의
_	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 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
-	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 의를 하여야 한다.
	<u> 기들 이역약 인덕.</u>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
	<u>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</u> <u>다.</u>
	27조의3(공립 공공도서관의 설 립타당성 사전평가) ① 공립
-	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자는
-	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・운영계

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

제29조(<u>공립</u>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·운 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 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하는 등 <u>공립</u> 공공도서관의 균 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• ③ (생 략)

- 제30조(<u>공립</u>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) ① <u>공립</u>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 로 임명한다.
 - ② <u>공립</u>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 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 원회를 두어야 한다.
 - ③ (생 략)

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
한 사전평가(이하 "사전평가"라
한다)를 받아야 한다.
② 사전평가의 절차, 방법 등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령으로 정한다.
제29조(<u>국립·공립</u> 공공도서관의
운영 및 지원 등) ①
국립·공립
<u>.</u>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30조(국립・공립 공공도서관의
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) ①
<u>국립·공립</u>
 ,
② 국립·공립
③ (현행과 같음)